

정부연구비 사용 Q&A 사례집

2026. 6.



〈일 러 두 기〉

- 본 사례집은 한국연구재단과 사단법인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회가 함께 제작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안정적 지원과 참여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사례집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2026. 5)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6. 4)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에 따른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과 사단법인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회는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례집과 관련하여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총괄팀(042-869-66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7

2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 39

1. 인건비	41
1. '인건비계상률'은 무엇?	41
2. 2개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월 급여 총액은?	42
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가요?	44
4. 연구책임자가 대학 강사일 경우 강사료 상관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45
5.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을 경우 인건비 추가 지급 가능 여부?	46
6. 3책5공을 채웠을 때 인건비 계상률 0%로 과제 참여 가능?	46
7.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무엇?	46
8.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	47
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47
10.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47
11.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총당금 지급 가능?	48
2. 학생인건비	49
12.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49
13. 학생인건비 지급 10% 이상?	49
14. 학생연구자 상급 학교(대학원)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51
1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매월 작성?	51
16. 본교 학생이 타 대학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인건비계상률 계산?	52
17. 해외인턴십 기간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54
18.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54
19. A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B대학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54
20. 학과의 학생인건비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55
21. 군사훈련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55
22. 방학기간(1개월)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생인건비 초과 계상?	56
23. 중단과제의 학생인건비 처리?	56

3. 연구시설·장비비	57
24.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내부 연구공간 임차료?	57
25.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를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58
26.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기자재의 연구 종료 후 추적 관리?	60
27. 연구시설·장비비 특례 적용한도 변경?	61
28. 장비 구입 시 지체상금 반납?	61
29. 3천만원 이상 수리 비용 심의 대상?	63
30. 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의 긴급 보수비 집행 가능?	64
31.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 철거 가능?	64
32. 임대료가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심의 대상 여부?	65
4. 연구재료비	67
33. 연구재료 구입 기한?	67
34. 서버용 메모리는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67
35. 협약 전 구입 했던 비용 현물 계상 가능?	68
36. 재료비 단계 분할 사용 가능?	69
37. 연구재료 구입시 증명자료 생략 가능?	70
5. 연구활동비	71
38.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 초과 집행 산정 기준?	71
39. 참여연구원의 지도교수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72
40. 사무용기기 구입 기한?	72
41. 실험실 책상 수리비?	73
42. 연구근접지원인력 출장비 사용?	73
43. 회의비 집행 시 사전 결재 필요?	73
44. 회의비 집행 시 외부 참석자 필요?	74
45. 총 연구기간 종료 이후 학회 연회비?	74
46.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	74
47.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기관 단위 통합구매·관리 가능?	75
48. 연구장비의 주변 부품 처리 세목은?	75
49. 유료 생성형 AI 활용 가능?	76
50. 학생연구자 학회 등록비, 입회비, 연회비 사용?	76
51. 학회장 겸직인 연구책임자의 학회출장비?	77
52. 세미나 개최 비용 처리?	77
53. 특근 식대 집행?	78
54. 대학 내 내부직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78

55.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	79
56. 실험도구 수리비?	80
57. 화상회의 후 모바일 상품권 지급?	80
58. 비대면 회의에 대한 식비 사용 증명자료?	80
59. 외부 회의장 장기 임차 및 회의장 사용료 집행 가능?	80
60. 논문 삽입 이미지 저작권료 지급?	81
61. 시약 보관할 시약장 구입?	81
62. 논문 관련 비디오 제작비?	81
63. 장기간 전문가활용비 지급?	81
64. 일용직 활용비 지출?	82
65. 교육훈련비 환급 여부?	82
66. 교육비 사전에 현금 입금 가능?	83
67. 세미나 개최 시 버스 임대 비용 처리?	83
68. 해외 문헌 구입 결제 후 품질된 경우?	83
69. 논문 커버 이미지 제작비 지급?	84
70. 논문게재료 과제 종료 후 2년 내 신청?	84
71. 일용직 기준 단가?	84
72. 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개최 비용 처리	85
73. 사무용가구·의자 연구활동비 집행 가능 여부	86
74. 국외연구자 초청 비용 처리	86
75. 출장비 중복 처리	86

6. 연구혁신비 **88**

76. 영리기관도 연구혁신비 계상 가능?	88
77. 연구혁신비 사용기준?	88

7. 연구수당 **89**

78.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 연구수당 단독 수령?	89
79. 다음 단계로 연구수당 이월 가능?	89
80. 종료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89
81. 계상한 연구수당 전액 집행?	90
82. 연구수당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90

8. 보안수당 **92**

83. 보안수당 지급 기준?	92
-----------------------	----

9. 위탁연구개발비	93
8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 잔액 전문기관 회수?	93
85.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93
86. 위탁연구개발과제를 면세로 처리 시 기 편성된 부가세 용도 변경 가능?	93
10. 국제공동연구개발비	94
8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비목 변경 가능?	94
11. 간접비	95
88.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에 나눠서 편성 가능?	95
89.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적용 가능?	95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2026년 개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적 재원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준수는 연구수행의 투명성과 연구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개발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 및 Q&A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례집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본 사례집은 참고 및 안내용이며 관련 법령 및 상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재단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관리자 등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과 항목별 핵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사례집 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③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규칙,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⑥해당 연구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시행계획 및 협약서, ⑦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 대상

- 본 권고사항의 적용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되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입니다.

3.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 연구개발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연구계획 확인

①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사용한다.**

-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에 맞게 계획(계상)해야 한다.
-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재단)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②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제재 처분 대상이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항

③ 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기간(단계 연구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항

• 관련규정 준수

④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급 기준**에 따른다.

- (예시) 전문가활용비, 출장비, 연구실운영비 등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②항, ⑤항, ⑬항 등

⑥ 특정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질의하고, 수행기관의 책임부서는 전문기관(재단)에 질의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사용내역 입증

⑦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 등 다른 결제 수단 사용 가능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항

⑧ 연구개발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 (증명자료)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간(단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화문서의 경우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www.gaia.go.kr)에 등록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항 및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이해충돌 회피

⑨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인건비나 연구수당 지급액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항

⑩ 연구개발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 부득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

4.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필요 시 본 권고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항목별 집행가이드와 증명자료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붙임 1

항목별 연구개발비 사용 핵심 가이드

〈주의 사항〉

본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 ①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항

- ②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등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 등은 인정된다.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주류 등 유희성 비용
- 중복 계상
 -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 계상, 동일 비용 현금/현물 중복 계상, 동일 비용 직접비/간접비 중복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거래(①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 포함, ②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 * (예시) A대학 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장 간 거래
-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 총괄 연구개발계획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과제를 말함.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함)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비영리기관에 한함)
- 정부출연기관의 본원과 분원 간의 거래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2. 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대상: 정부출연기관) 또는 월(대상: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단위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 (인건비계상률 개념) 연(월)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
- (산출식)

$$\frac{\text{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ext{『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times 100$$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항,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항 등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② 총인건비계상률은 대학 등은 월 100%(월 급여 기준), 정부출연기관은 연평균 130%(정부수탁과제 100%, 연 급여 기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다.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130% 이하	월 100% 이하	연 130% 이하	월 100% 이하	월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100% 이하	월 100% 이하	연 100% 이하	월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100% 이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 총액을 계상하며, 참여연구자 관리 등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다.
- (관련 법령 등) 「근로기준법」,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등
- 인건비계상률은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⑤항,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③항, ⑤항 등



③ **(비영리기관)** 「고등교육법」 제14조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④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89)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가능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이 원칙(직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 및 사용 금지).
- (참고)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이며, 간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임.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⑦항

⑤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수당 사용기준(p.241)

⑥ 영리기관은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계상대상)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등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항, 제73조(사전 승인 사항) ①항

3. 학생인건비

- ①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월 100% 이내이며, 초과할 수 없다. 정부 출연기관(대학)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원 이상으로 기관 연구개발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인건비계상률 제외 항목)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장학금,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00)

- ②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다.

- (확약대상)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기관장 3자 간 협약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②항

- ③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상위 학위과정에 대한 합격통지서, 입학예정서 등 증명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비교 1. '학생연구자' 정의

- ④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총인건비계상률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가능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01)



- ⑤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⑧항, 제49조(대학 학생 인건비 사용기준)

- ⑥ 개인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항~④항

4. 연구시설·장비비

- ①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계기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재단)),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상기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 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항,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②항

- ② (원칙)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를 완료(검수완료) 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종료일까지
- 재난, 재해, 그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⑥항

- ③ 원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 임차료는 사용이 불가하다.(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가능) 다만,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능하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④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 개발비 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5절(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p.220)

- ⑤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하고 구매해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항

5. 연구재료비

- ①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라. 연구재료비

- ② 연구재료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6절(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23)

- ③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중앙구매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물품에 대해 검수해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항



6. 연구활동비

- 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단,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항

- ②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항,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p.229)

-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항

- ④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항

- ④ 국외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항

⑤ 소프트웨어활용비를 사용할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단,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항 및 ⑩항

⑥ 학회 연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

- 단,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34)

⑦ 논문게재료는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사사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은 직·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28)

⑧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인력 지원비로 계상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29)

⑨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이 불가하다.

- (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30)

7. 연구혁신비

- ①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2026년은 일부 시범사업에 한하여 도입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2(연구혁신비 사용용도)

- ② 비영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혁신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연차별 평균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재료비 건별 300만원, 연구활동비 건별 50만원, 인건비 또는 인건비 성격 비용,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계상 불가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2(연구혁신비 공통 사용기준)

8. 연구수당

- ①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 제외)+미지급인건비 등]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단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법1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야 함
 -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항, ②항, ③항

②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8절(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39)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⑤항

④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단, 총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⑤항

⑤ 비영리기관 연구부서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8절(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41)

⑥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제3호

⑦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⑧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초과한 경우 다음 산출식에 따라 해당 금액은 회수된다.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20/100)$$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항



9. 위탁연구개발비

①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항

②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③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⑦항

10. 간접비

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받는다.

*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사용 불가 항목 외 간접비 집행 가능

[공통 사용 불가 항목] 1) 산단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2) 배상금·위약금 등 비용 3) 연구와 관련 없는 비용(고시 위임 사항)

[인력지원비] 1) 전임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 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2)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

[연구지원비] 1)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2) 건축비 및 리모델링 비용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②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간 내에 간접비를 흡수해야 하며, 연구종료일 이후 흡수할 경우 회수대상임.
- (영리기관) 간접비 통합관리가 불가하며, 간접비 사용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관련
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②항,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②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251)

③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이관한다.

- 직접비: 직접비 잔액
- 간접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이관 금액 산출식] 연구개발과제(해당 단계)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④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이다.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④항

⑤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아래 산출식에 따른 간접비 금액은 불인정(회수대상) 된다.

[간접비 불인정 금액 산출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항



붙임 2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명자료

※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목	증명자료
1. 인건비	<p>내부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계좌이체 증명(편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같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같음 가능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p>외부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해당 참여하는 과제의 기본 정보, 연구자 기본정보, 참여기간, 연(월) 인건비 계상 금액, 과제 참여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④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⑤ 계좌이체증명
	<p>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학생인건비	<p>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 ※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2024년 9월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③ 참여연구자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학적, 참여기간, 변경사항)
	<p>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기간, 학생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세목		증명자료
3.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 자료
4.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5.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④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⑤ 자체규정



세목		증명자료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자체규정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④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⑤ 자체규정
5. 연구 활동비	회의장 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회의비 식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사전 내부결재문서와 실제 회의내용(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회의내용이 수정 반영된 내부결재문서로 같음 가능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출장비-국내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같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교통비, 숙박비 등) 구비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자체규정(내부여비규정)
	출장비-국외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같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항공권(E-ticket 포함), 숙박비 등) 구비

세목		증명자료	
5. 연구 활동 중 비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다른 증명자료로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⑥ (해당시)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⑦ (해당시)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자체규정(내부여비규정)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부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사용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⑥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규정 ⑦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사무용품비,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교육참가자 성명 포함)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필요 시)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참석자 성명)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학회 참가 확인서 등 학회참가 여부(명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③ 자체규정	



세목		증명자료	
5. 연구 활동 동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자체규정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도서명, 권수 등 확인가능한 자료)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당 과제에 성과 등록된 내역으로 같음 가능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6.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 증명	
7. 보안수당		① 지급신청서 ② 계좌이체증명	
8.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②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10. 간접비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붙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중심)

□ 국가연구개발사업(공통사항)

1.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 시 검수 의무 없음(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부과 (사용기준 제22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 가능 (사용기준 제22조제4항)

2.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1항)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
인건비계상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계상률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구소 포함) : 연 급여 총액 • 그 외 기관 : 월 급여 총액
계상률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 (특정(연)의 4대과기관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 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구분	종전	혁신법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불가(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계상률 100%(정부 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 (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 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 입력됨
인건비 현금지급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 제외) <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 기준 별지3호서식) 관리 필요 <p>〈사용기준 제65조제6항〉</p>

3.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p>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p>	<p>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p>
	〈신 설〉	<p>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p> <p>※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p> <p>(※'23년도 변경사항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경됨.)</p>

구분	종전	혁신법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 ※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연구참여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확약 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박사 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인건비로 지급)

4.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 도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또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 적용 가능 (‘25년도 변경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

5.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재료 구매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6.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동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술활동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동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 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사용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 내 사용용도 신설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4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 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 	<p>〈삭제〉</p>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

7.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정부출연연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 가능

8.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보안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보안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 (*'24년도 변경사항)

9.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4항>
정산 및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

10.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 부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각호)만 계상 가능 · 기본사업 중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1.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시점(당해 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 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단계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 시점
간접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처리규정 제25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12.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 사용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도 운영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영리기관(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혁신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중 하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제1항>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시 자체자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자체자원 사용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제2항>
증명자료 보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명확(해당연도 종료일부턴 또는 최종연구 종료일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
전자문서 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 보관 의무 면제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처리규정 제2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 및 건별지급 연구개발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제2항>
자체회계 감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 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삭제>

- 사전 승인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신설>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신설>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 변경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집행하기 위한 간접비 비율 조정사항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구입 또는 변경 임차 - 3천만 원 이상 시설·장비 구입 또는 변경 취소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이월)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 통보기한	• 별도 통보기한 없음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전체(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 15일 내 통보 (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
전문기관 보고사항	• 인건비의 20% 증액 • 참여연구자 변경(연구개발정보관리)	〈삭제〉
통보사항	• 별도 없음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13.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정의	• 별도없음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정산주기	• 연차별 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정산 (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 (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확인서 • 〈신설〉	• 〈좌동〉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 제외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정산시점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통한 상시 점검 가능
정산방법	•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 부당집행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회수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구분	종전	혁신법
회수금액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p>〈삭제〉</p>
정산 이익신청 최대가능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정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회에 한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4조제1항〉
회수금액 반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시스템 상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국가인보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기 조정가능
회수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면제
회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정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 -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
정산이의 신청서 서식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서식 마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정부지분률, 직접비, 연구수당, 간접비 사용비율 등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연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단계)연구개발기간 단위

2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



1 인건비

Q1. '인건비계상률'은 무엇?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로 계상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계산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대학(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포함)인 경우 '월'급여가 기준액이며,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연구소 포함)인 경우 '연'급여가 기준액입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월(연)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계상 비율입니다.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인건비 계상률 산출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92〉

○ 인건비 계상률 산출식

$$= \frac{\text{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ext{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times 100$$

-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정부연구과제 A과제에서 인건비를 100만원 받을 경우 인건비 계상률은?
 ⇒ (100÷300)×100=33.3%

〈참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 한도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이하	월 단위 100% 이하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 총인건비계상률* = ① 인건비계상률 + ② 학생인건비계상률 + ③ 학생인건비지급률 +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Q2. 2개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월 급여 총액은?

참여연구자A가 원 소속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겸직으로 타 기관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인건비 계상률 산출에서 월급여 총액은?

A. 양 기관에서 지급 받는 인건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계상률 산출이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입니다. 참여연구자 A는 원 소속기관과 타 기관 2곳에 소속되어 있으므로(겸직 승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총액은 두 기관에서 지급 받는 인건비를 합한 총액이 됩니다.

소속기관 외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과 다른 참여 기관 모두, 해당 연구자의 월 급여 총액을 합산하여 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 총인건비계상률이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에 초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96〉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
인건비 계상률 산출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서 별도 지급



구분	종전	혁신법
계상률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없음(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구소 포함): 연 급여 총액 • 그 외 기관: 월 급여 총액
계상률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 (근거법령 미비)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 (특정 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 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기존보다 적용 대상 기관 확대)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 이내(출연연기본 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불가(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0% 입력불가(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 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 RCMS 시스템에 자동 입력됨
인건비 현금지급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 제외) <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 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 기준 별지2호 서식) 관리 필요(사용기준 제65조제6항)

Q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가요?

A.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입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9조 (2026. 5.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3.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 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3.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대학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Q4. 연구책임자가 대학 강사일 경우 강사로 상관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대학 시간강사인 연구자 분이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시간강사로 월 금액과 관계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제4항 참조).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89〉

○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 계상 가능)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우측의 가능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p>※ 위 공통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0~192」을 참고</p>

Q5.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을 경우 인건비 추가 지급 가능 여부?

A연구원은 대학 비전임연구원으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지만 내부기준 인건비 최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자체규정 등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 계상률 100%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Q6. 3책5공을 채웠을 때 인건비 계상률 0%로 과제 참여 가능?

3책 5공(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인건비 지급 없이 0%로 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A.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내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3책 5공을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건비 계상률 0%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참여하려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7.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무엇?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A. 직접비에서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으로 직접비 내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연구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를 사용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 가능



구분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내용	대학 등(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12호)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2호)
인건비 재원	간접비	직접비 내 인건비

Q8.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A. 불가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10.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계상을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양 기관에서 지급 받기로 한 급여 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을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에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연구자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99, Q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11.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총당금 지급 가능?

연구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총당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6.4.)」 p.197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을 간접비(인력지원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2 학생인건비

Q12.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기타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용기준 제 49조)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은 사용기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Q13. 학생인건비 지급 10% 이상?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연구개발기관(대학 등)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 월 130만원, 석사과정: 월 220만원, 박사과정: 월 300만원, 통합과정: 학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학생인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text{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7조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div \text{제3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사용기준 제 49조)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은 사용기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Q14. 학생연구자 상급 학교(대학원)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본교 학생연구자(학사과정생)이 2월 졸업 후 동일한 대학의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졸업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학생연구자’의 정의에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졸업월의 학생인건비를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하지 않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일 이후, 입학일 이전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제2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로 작성 필요합니다.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 확정 확인 가능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내 ‘학생연구자’의 정의〉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Q1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매월 작성?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매월 작성하여야 하나요?

A.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학기, 학년’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 체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종전의 ‘월’ 단위에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frac{\text{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7조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ext{제4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용기준 제 49조)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은 사용기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02〉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 분	종 전	혁신법
연구참여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은 사용기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Q16. 본교 학생이 타 대학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인건비계상률 계산?

본교(A)의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300만원이고 그 학생이 참여한 타 대학(B)의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200만원의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을 때 본교 학생의 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본교(A, 학생연구자 소속 대학)를 기준으로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본교를 기준으로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B대학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A대학에 통보해 총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04〉

Q7.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

구분	원 소속 기관(A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20만 원)	타 기관(B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 원)	가능 여부	사유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320만 원	0원(계상률 0%)	가능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300만 원	50만 원	불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300만 원	0원(계상률 0%)	불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 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250만 원	7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0만 원	1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20만 원	2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만 원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10항에 따르면 원 소속 기관 지급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타 기관 지급액에 따라 최대 20만 원 까지만 지급 가능하여 20만 원 지급 가능, 20만 원 미만 지급은 불가능)
	30만 원	32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0원(계상률 0%)	30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원 소속 연구 개발과제에 불참	연구개발과제 불참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상태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연구개발과제 불참	3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Q17. 해외인턴십 기간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방학 기간에 해외 인턴십을 1달 이상 갈 예정인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연구수행이 가능하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의 해외 체류에 따라 실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연구참여 확약을 변경하여 해당 기간은 연구참여 확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8.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제5항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용기준 제 49조)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은 사용기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Q19. A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B대학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A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박사과정)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타 대학인 B대학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다음의 경우에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구분	원 소속기관(A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50만원)	타 기관(B대학) 박사과정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원)
학생인건비	30만원	320만원

A. 불가합니다.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100% 초과하여 32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Q20. 학과의 학생인건비 지급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우리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기관은 아닙니다.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던 중 우리 대학 인공지능공학과에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할 때 학과에서 정한 학생인건비 기준을 따라야 할지, 대학 기준을 따라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A. 연구개발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중략)

⑧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기준 제 49조)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은 사용기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Q21. 군사훈련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군사훈련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 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2. 방학기간(1개월)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생인건비 초과 계상?

방학기간 학생연구원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예정인데 지급 총액이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A. 불가합니다.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참여기간 및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학생연구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도 안됩니다.

Q23. 중단과제의 학생인건비 처리?

연구개발기관단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이직할 예정인데, 이직 기관이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기관이라 과제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건비는 반납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해약이나 중단을 통보받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반납액을 산출한 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사업 담당 부서)과 협의한 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한 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관리기관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학생인건비를 모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친 경우



3 연구시설·장비비

Q24.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내부 연구공간 임차료?

A. 불가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7호에 따라, 원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희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 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Q25.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를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제5호나목에 따라, 비영리 기관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용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입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희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약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약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82〉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예외(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구분	계상불가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Q26.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기자재의 연구 종료 후 추적 관리 방법?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임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A. 임의 처분은 불가하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제41조(처분 결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개선조치, 재배치 및 기관 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1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개선조치, 재배치 및 기관 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 수요가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 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를 30일 이내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때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는 별표 13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조의 연구시설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작품 또는 시제품
2. 연구시설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Q27. 연구시설·장비비 특례 적립한도 변경?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한도를 증액할 수 있나요?

A. 협약변경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제②항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비통합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2. 신청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사용내역

Q28. 장비 구입 시 지체상금 반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비로 사용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개발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개발비(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 하고, 최종(단계) 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182〉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Q29. 3천만원 이상 수리 비용 심의 대상?

과제 수행 시 사용하는 장비의 일부 부품 노후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품 교체 등을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수리 견적 비용을 약 3천 5백만원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장비구매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A.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비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①항제5호를 보면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또는 임차에 대한 것으로 장비수리비는 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Q30. 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의 긴급 보수비 집행 가능?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기한은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비목으로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아도 장비수리 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연구장비 신규 도입·설치·임차가 아닌 단순 유지 보수 비용의 경우 집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연구개발비(직접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연구장비 보수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Q31.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 철거 가능?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연구장비의 철거까지 연구계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연구과제 종료 이후 철거되는 건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출원인행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항). 이에 따라 장비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다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3개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로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Q32. 임대료가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심의 대상 여부?

연구계획서 상에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연구장비를 대신하여 다른 장비를 월 170만원의 금액으로 5년간 임대하는 경우 총 임대료가 3천만원에서 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가요?

A. 심의대상입니다.

연구개발기간 내 임대료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연구재료비

Q33. 연구재료 구입 기한?

연구수행과정에서 재료는 수시로 필요한데, 연구종료일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3항에 따라 연구재료비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종료일에 임박한 구매인 경우는 특히 수행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유의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적정 수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행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등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3〉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Q34. 서버용 메모리는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서버용 메모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메모리가 범용성 장비이기는 하나, 양자 컴퓨팅 과제 수행을 위한 계산용 서버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서 항목을 연구활동비로 구입해야 할지, 재료비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관련 조항과 장비 여부 파악 후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연구실운영비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이 포함됩니다.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재료비의 용도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이 포함됩니다. 연구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소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서버용 메모리 구입은 위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중에서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자)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자문이나 관리 비용차)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Q35. 협약 전 구입 했던 비용 현물 계상 가능?

연구재료비를 현물로 부담받기로 계상(계획)되어 있는데 1. 연구과제 협약 시작 전에 구입했던 비용에 대해서 현물로 계상 가능한가요? 2. 연구과제 협약 시작 후에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 현물로 계상 가능한가요? 3. 다른 연구과제로 집행하여 구입한 연구재료비 비용도 현물로 중복 계상이 가능한지요?



A. 현물 계상은 가능하나, 중복 계상은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를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협약 시작 전에 구입한 비용, 협약 시작 후에 구입한 비용은 현물 계상이 가능하나, 다른 연구과제로 집행하여 구입한 연구재료는 현물로 중복 계상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Q36. 재료비 단계 분할 사용 가능?

원활한 연구개발일정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해외수입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뢰를 통해 거래처와 계약 후 일부 선금은 1단계에 집행하고, 잔금은 2단계 기간에 최종 입고(구매검수완료) 후 집행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3항에 따라 연구재료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3〉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Q37. 연구재료 구입시 증명자료 생략 가능?

연구재료 구입시 검수 절차 간소화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입시 검수확인서만 구비해도 되나요?

A.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3항에 따라 연구재료비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검수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규정화 되어 있다면 검수확인서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3〉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및 인정기준

- 비영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 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5 연구활동비

Q38.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 초과 집행 산정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 집행 가능한데, 전단계(전년도) 사업비의 이월금이 포함되나요? 비영리기관에서 자체 분석기관을 활용해서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40% 범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비율에는 전단계 이월금이 포함됩니다,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자체 분석기관을 활용한 시험분석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40%에 포함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①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②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 ③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6〉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포함

Q39. 참여연구원의 지도교수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지도교수가 연구과제 수행 분야의 국내 석학입니다.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는 아니지만 향후 과제 참여 예정인 연구자에게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전문가활용비 지급을 위한 자문 기간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과 중복될 경우 자문료 지급은 불가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4. p.229〉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①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Q40. 사무용기기 구입 기한?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등)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별지 서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첨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234>

구 분	종전	혁신법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4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 가능

Q41. 실험실 책상 수리비?

실험실 책상 수리비의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직접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항에 따르면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42. 연구근접지원인력 출장비 사용?

수행연구과제의 연구행정을 맡고 있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Q43. 회의비 집행 시 사전 결재 필요?

연구개발비에서 회의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비 집행 사전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2026. 5. 6.부터 회의비(식비) 집행 시 사전 결재가 없어도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④항의 일부개정(2026. 5. 6.)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개정일 이후 집행되는 회의비(식비)에는 사전 결재가 없어도 집행 가능합니다.

Q44. 회의비 집행 시 외부 참석자 필요?

연구개발비에서 회의비(식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에 외부참석자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이외의 외부참석자가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④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Q45. 총 연구기간 종료 이후 학회 연회비?

총 연구기간이 2026. 1. 1.~2026. 12. 31.이고 2026. 6. 1.에 결제일로부터 1년인 연회비를 결제할 경우 집행 가능한가요?

A.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연회비 사용일이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과제와 관련된 학회일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신 학회비는 불가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8〉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회 연회비 인정기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 연회비(1년) 인정

Q46.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도 수행연구과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하였기에 연구수행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험분석비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Q47.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기관 단위 통합구매·관리 가능?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다수의 과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과제 연관성이 있다면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하고, 분할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비영리기관은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하거나,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Q48. 연구장비의 주변 부품 처리 세목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수치해석 관련 데이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 범용성 컴퓨터를 연구장비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주변 부품(HDD, 허브, 멀티탭 등)은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 중 어느 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별표 ③의1)에 따르면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은 연구장비에서 제외됩니다. 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라 하더라도 그 주변 부품은 장비라기보다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무용품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중 장비활용 목적의 장비소프트웨어, 일반적인 분석 시행 툴 등의 단독소프트웨어(참고 확인),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활용 목적에 따라 적용 비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	포함 대상	제외 대상
연구 장비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별표 7]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기자재·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 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제외대상(예시)

구분	설명	예시	
단독 소프트웨어	오피스 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MS 오피스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포토샵,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등
	설계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	AutoCAD, MathCAD, Catia 등
	분석·해석 소프트웨어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판단하고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Mathematica, MATLAB, ANSYS, ABAQUS, EMME 등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Oracle, Sybase, MS SQL, Tiberio 등
	기타 소프트웨어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독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WebToB, JEUS, MIS 등
지원시설	연구개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	행정동, 강당, 기숙사 등	

Q49. 유료 생성형 AI 활용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서 생성형 AI 유료 버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연구활동비(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Q50. 학생연구자 학회 등록비, 입회비, 연회비 사용?

학생연구자가 학회발표를 전제로 하여 학회 가입 및 학회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학술대회 등록과 함께 입회비, 연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학생연구자가 참여연구자이며,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이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연구기간 내에서 학회 가입비, 연회비, 등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Q51. 학회장 겸직인 연구책임자의 학회출장비?

연구책임자인 대학 교수님이 학회장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원, 학생들의 학회 등록비, 학회 출장비 등이 지급 가능한가요?

A.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연구비는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직접비),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참여연구원인 경우 사용합니다. 연구책임자가 학회장이라면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 참석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이 학회에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구개발비와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원, 학생들의 등록비, 학회 출장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행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며,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회등록,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이어야 합니다.

Q52. 세미나 개최 비용 처리?

1박 2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들은 다음날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숙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숙박비는 출장비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세미나 개최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A. 가능합니다. 단,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세미나 내용이 수행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미나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미나라면 숙박비는 개별 사람에게 지급하므로 출장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미나 행사비용에서 숙박비를 일괄 처리하였다면 여비에서 관련 비용은 계상이 불가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중에서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Q53. 특근 식대 집행?

특근식대 사용 시 서명 유무가 궁금합니다. 회의비와 같이 연구책임자 서명만으로 가능한지, 특근자가 누구인지만 등록해도 되는지요?

A.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야근·특근 식대 사용 시 증명자료는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자체규정입니다. 초과근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등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33〉

- 연구활동비 중 야근·특근 식대 증명자료
-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 ②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③ 자체규정

Q54. 대학 내 내부직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직원을 전문가로 활용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행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면 전문가활용비는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연구실)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9〉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중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 ①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 단위 부서를 말함.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참여연구자와 별도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참여연구자와 별도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Q55.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합니다.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기간이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기간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 단위가더라도 최소기간 계약 단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최소기간 계약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단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35〉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연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기간이 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기간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 단위가더라도 최소기간 계약 단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최소기간 계약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단위로 계상할 수 있음
- 상기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Q56. 실험도구 수리비?

pipette(실험도구) 점검 수리비가 연구재료비에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장비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A. 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pipette(실험도구)이 장비인지 사무용 기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면 연구시설·장비비이며, 장비가 아닌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리라면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자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57. 화상회의 후 모바일 상품권 지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트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회의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의 참석자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트콘, 문화상품권 등) 지급은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회의 후 식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교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Q58. 비대면 회의에 대한 식비 사용 증명자료?

비대면 회의 시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회의장면 캡처 자료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는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에 대하여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236). 이는 회의비 사용이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비가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명자료는 위에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온라인 회의 장면 캡처 자료, 만약 외부기관에 식사가 제공되었다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과 포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Q59. 외부 회의장 장기 임차 및 회의장 사용료 집행 가능?

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장을 임차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 중 잦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프라가 좋은 회의장 탐색 및 대관이 너무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10% 이상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회의실 또는 회의용 공간을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임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회의 개최 시 건별로 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합니다. 일회성 회의장 임차가 아닌 장기 임차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장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회의장 임대는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회의비(회의장)는 개최 시에 건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Q60. 논문 삽입 이미지 저작권료 지급?

리뷰 논문 투고와 관련해서 논문에 사용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료 지급이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직접비)는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문의하신 논문투고가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논문에 사용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료는 논문투고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61. 시약 보관할 시약장 구입?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입한 시약류들을 보관할 시약장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약장의 경우 연구재료비에 해당 하나요?

A.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입니다.

연구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시약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⑬항에 따를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62. 논문 관련 비디오 제작비?

논문 관련 비디오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제작 목적에 따라 간접비 또는 직접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성과인 논문으로 출판된 내용을 비디오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 제작물로 이는 간접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통해 동료 연구자의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Q63. 장기간 전문가활용비 지급?

매 월 같은 분께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증빙 자료 등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지만 같은 분께 매 월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 자체규정 등을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는 내부 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 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 계좌이체증명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간 자문일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Q64. 일용직 활용비 지출?

학생들에 대해 단기 일용직 활용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의 국가연구사업 인건비계상율이 100%라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한도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자세한 자체 내부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책정하면 될까요?

A. 자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를 때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월 단위로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합니다. 대학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일용직 활용비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65. 교육훈련비 환급 여부?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된 비용을 다시 연구비로 반환 처리해서 집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 대상 교육인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비를 환급 받는다면 연구기간 중이라면 직접비로 산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최종(단계) 종료되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교육인 경우 미 환급 시 해당금액만큼 불인정 됩니다.

Q66. 교육비 사전에 현금 입금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부 교육인 경우 사전에 현금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전 현금 입금 후 교육 수료 후 이수증 및 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 사전 입금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교육 이수 후 전자(세금)계산서 및 교육이수증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인 경우 사전 입금 시 청구 계산서로 발행 후 교육 수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 이수를 못하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Q67. 세미나 개최 시 버스 임대 비용 처리?

세미나 개최(행사)를 계획 중 세미나 개최 장소까지 거리가 멀어 버스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편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여비를 통해 지급하는 것보다 버스 임대 비용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버스 임대료 집행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단,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국내 출장, 임대)에 따라 세미나 개최 계획(소요예산 포함) 등 내부 결재문서 품의를 통해 버스 임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용차량 사용에 따라 여지 지급 시 일비를 1/2 삭감 지급 등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여비 규정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Q68. 해외 문헌 구입 결제 후 품절된 경우?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외 문헌을 구매 완료하여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문헌이 품절되어 일부금액이 취소되었습니다. 외화 결제금액으로 환율차액 및 변동에 따라 최초 결제금액(9만원)보다 적은 금액(8만원) 환불된 경우 차액을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판매처의 품질로 인한 취소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외 문헌 구입 결제 대금 지급 완료 후 해당 판매처의 품질로 인한 환급이라면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69. 논문 커버 이미지 제작비 지급?

논문이 게재될 저널 커버 이미지 제작에 드는 비용을 논문게재료로 집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논문 커버 이미지 제작이 수행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논문 게재에 필요하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70. 논문게재료 과제 종료 후 2년 내 신청?

논문게재료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논문게재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 하는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Q71. 일용직 기준 단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단순 업무를 맡기시고 일용직 활용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일용직 지급기준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체규정에 따릅니다.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릅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과다 계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체규정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2. 세미나·워크숍 등 행사 개최 비용 처리?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규모 세미나·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경우 연구비 처리 가능 여부 및 처리 비목은 무엇인가요?

A. 연구활동비(회의·세미나 개최비)로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개최하는 세미나·워크숍 등은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때, 전문 행사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출 내역이 명확해야 하고 증빙(과업지시서, 검수조서)을 명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5〉

가. 사용용도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회의비	회의장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회의비 식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사전 내부결재문서와 실제 회의내용(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회의내용이 수정 반영된 내부결재문서로 같음 가능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Q73. 사무용가구·의자 연구활동비 집행 가능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연구개발비로 집행가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해당 가구가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실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이라면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범용성 비품은 간접비나 기관 고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범용성 비품(단순 사무용 가구 등)은 간접비에서 집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8〉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다른 사용용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 ①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② 인건비성 비용
 - ③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 ④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용

Q74. 국외연구자 초청 비용 처리

국외 거주하는 연구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체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연구활동비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구활동비 출장비로 지급하면 되는데, 해당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집행하면 됩니다. 참여연구자가 아닌 외부 자문 성격이라면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전문가 초청 항공료 및 체재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Q75. 출장비 중복 처리

연구자가 출장지(관계기관)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경우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중복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출장비 사용 시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집행해야 하며, 항공기를 이용한 장시간 출장(국외출장 등) 시에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7〉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중략)

③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6

연구혁신비

Q76. 영리기관도 연구혁신비 계상 가능?

A.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연구혁신비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금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6년은 일부 시범사업에 한하여 도입

Q77. 연구혁신비 사용기준?

A. 연구혁신비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의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별 평균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연구수당

Q78.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 연구수당 단독 수령?

단계 연구기간이 3차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 2명, 2차년도에 1명, 3차년도에 1명일 경우 2~3차년도에 참여연구원이 모두 1명인데 연구수당 단독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은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 종료 시 실시됩니다. 1~3년 차에 2명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참여연구원 1명에게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42〉

전체 연구개발기관(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Q79. 다음 단계로 연구수당 이월 가능?

혁신법으로 정산은 최종(단계)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데, 단계 간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시 이월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도 이월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수당 및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80. 종료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연구종료 후 연구수당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일부 비용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연구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Q81. 계상한 연구수당 전액 집행?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 계상한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후 연구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연구수당 지급액은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비 사용비율이 연구수당 지급비율을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산출식에 따른 금액은 회수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eft[\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left(\text{연구수당 지급비율} -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20}{100} \right) \right]$$

Q82. 연구수당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 시점을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A.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 되는 경우 등입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협약 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수당을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8 보안수당

Q83. 보안수당 지급 기준?

보안수당은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 인건비의 3% 범위 내입니다.

보안수당은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에 따르면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 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안수당은 지급을 위한 별도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보안수당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9 위탁연구개발비

Q8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 잔액 전문기관 회수?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사용잔액을 종전에는 상위과제에서 반납했는데, 혁신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전문기관에서 회수합니다.

혁신법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잔액 등은 전문기관에서 직접 회수합니다. 정산도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Q85.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위탁연구과제 협약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가세를 연구활동비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세는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을 사용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과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함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한 세금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

Q86. 위탁연구개발과제를 면세로 처리 시 기 편성된 부가세 용도 변경 가능?

위탁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직접비에 부가세를 포함해 승인받았으나 부가세 신고 시 면세로 신청하고 편성된 부가세를 다른 세목으로 변경 집행이 가능할까요?

A. 부가세 면제 과제로 판단 시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로 판정되면 기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6. 4. p.2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 연구용역과 기술연구 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Q8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비목 변경 가능?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타비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는 승인성 협약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3.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혁신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간접비**

Q88.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에 나눠서 편성 가능?

직접비 80%, 간접비 20%로 나누어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편성하거나 1~7월 직접비, 8~12월 간접비로 기간을 달리해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에서 교차, 중복, 분할하여 계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직접비와 연구개발기관 자체 재원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⑨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⑦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6. 4.), p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Q89.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적용 가능?

A. 아닙니다.

연구비 네거티브 규제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접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 * (공통 불가 항목) 산단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배상금·위약금 등 비용, 연구와 관련 없는 비용(고시 위임 사항)
- * (인력지원비 불가 항목) 전임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 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
- * (연구지원비 불가 항목)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비용, 건축비 및 리모델링 비용

[참 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규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
<https://www.kistep.re.kr>

한국연구재단

2026. 6.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총괄팀(042-869-6655)

e-mail : rnd@nrf.re.kr